경리 인코 너

매입세액불공제 되었어도 업무관련 비용이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법인세법 제21조는 법인이 지출하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이 지출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상쇄되거나,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환급받아 회수되는바 결과적으로는 법인이 실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 애초부터 매출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도 있는데, 이렇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 는 매입세액의 경우까지 손금에 반영하지 못한다면 법인의 입장에선 좀 억울한 측면이 있 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중 법인의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못하는 매입세액 중 손금에 반영이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또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은 직접 비용으로 인정받는 대신 해당 승용차의 취득원가 및 자본적지출로 반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으로 반영된다.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에 발생한 매입세액도 소형승용 자동차의 구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지관련비용에 대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법인22601-1300. 1991.07.0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차량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 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접대비 등의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 서는 공제되지 않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당해 접대비 등에 포함 시켜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한도초과의 경 우에는 이에 따른 매입세액도 손금불산입 된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분도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하다.

부동산의 전세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바(부가령 제71조 6호), 거래징수당한 임차인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동산 임차용역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손금산 입이 가능하다.

현행 법인세법상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할 것을 전제로 하였기 때문에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만을 손금산입 할 수 있도록 규정(법칙 §11 2호)하고 있는데, 실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 법인 22601-2319, 1985.7.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 매출표준으로 하여 산출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부동산임대법인이 부담하는 때에는 이를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예정신고 기간 포함)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금계산 서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22 · 03 · 30 www.eAn\$e.com 9